

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모 계획

- ❖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창농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
- ❖ 지속가능한 충남농업을 위한 젊은 농업인들의 충남 정착 확대

1

추진방향

-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·육성하여 미래 충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
- 참여 의지가 높고, 사업 계획이 뚜렷하며 목적 의식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- 농장경영 목표, 사업계획 수립 등 청년농업인 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

2

사업개요

- 사업량: 50개소 내외
 - 시군별 추천 인원 5명 이내(예: 신규창농 2명, 디딤돌 3명)
- 총사업비: 4,000백만원 내외(도비 15%, 시군비 35, 자담 50)
 - 개소당 50~100백만원 사업계획 심사에 따른 차등 지원

※ 2025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량, 사업비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1 사업신청

○ 신청자격

- ① (연 령) 사업시행년도 12. 31.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 청년
 - 주민등록기준 신청 가능 연령: 1981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
- ② (주 소)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(농업경영체)
 * 사업시행년도 기준 청양군 거주 혹은 청양군 전입 예정자
 ** 전입 예정자의 경우 예정지역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
- ③ (병 역)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④ (영농경력)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
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(회계연도 단위로 계산)
- ⑤ (제외대상) 농업 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 보유한 자(사업자), 부부
 1명만 지원(형제, 자매는 가능),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자

페널티 -5점

- 최근 3년 이내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유사(자본지원 성격)사업 수혜자
 * 해당사업: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,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,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지원,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(사업시행일 기준 2022. 1. 1.~2024. 12. 31.)

가산점 +5점

- 제2기 충청남도 우수 청년 농부(30명)
- 제1차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(5팀)
- 제1기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자(30명)

- 공모접수: 2024. 9. 5. ~ 9. 20.
- 접수처: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미래역량팀
- 신청양식: 사업신청서(양식 1) 및 첨부서류
- 공모분야

유 형	지 원 대 상	지 원 범 위
① 신규창업	농산물 생산·가공 등 신규창업자 (독립경영 3년이하)	(자본) 창농 기반 시설, 장비 등 (경상) 기술 지원 및 컨설팅
② 영농정착 디딤돌	농산물 생산, 가공, 유통 등 사업 기반 확장으로 전문경영체로 성장 하려는 자 (독립경영 4년이상~10년 이하)	(자본) 농업신기술 도입, 디지털 농업, 융복합 등 영농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구축 및 장비 등 (경상) 신제품개발, 포장디자인 개선, 유통판로개척, 홍보물 제작 등

※ 보조사업비는 자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적 경비는 총 사업비의 20% 이하 추진

2 대상자 선발

○ 사업대상자 최종선발(충남농업기술원)

- 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(10월 중)
 - * 발표심사계획 추후 공문 시행 알림
-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3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
최종 심사 진행
 - * 사업 취소 발생 시 대체 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
- 2025년 도 본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발표(11월 말~12월 초)

3 사업추진체계 및 일정

추진단계	일 정	주 요 내 용
공모사업 접수기간 (신청자→농업기술센터)	8~9월	○ 공모사업 홍보(홈페이지 등) ○ 신청서 접수(시군농업기술센터)
↓		
사업대상자 추천 심의 (청양군농업기술센터)	9월	○ 대상자 추천(시군별 5명) - 시군 자체 심사 및 검증 실시
↓		
최종 심사 및 선정 (충남농업기술원 심사위원회)	10월	○ 심사위원 구성 : 3명 내외(외부심사위원) ○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
↓		
최종선정 공문 (농업기술원→시·군)	11월 말~ 12월 초	○ 최종 선정자 공지(2025년 본예산 확정 후)

4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

가. 지원체계 구축

-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 단위 경영·기술지원단 구성
 -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, 기업,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
- 사업선정 전·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
 - 시장조사, 마케팅, 재무관리, 경영,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
 - 창업, 전문기술(가공),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

나. 사업계획 수립

- 사업비는 영농 및 사업 계획에 근거한 자본적 성격의 영농기반 시설 조성 장비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

* 농기계, 기계, 저장시설 등 단순 지원사업 지양
* 단순 소모성 재료비, 국외여비, 인건비 지원 불가

-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의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것
- 사업계획과 연관된 기술 및 컨설팅, 신제품 개발,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20% 이내에서 경상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.
-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,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
- 컨설팅에 의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변경 승인 요청 가능
 -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20% 미만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변경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알림, 20~30%이면 농업기술원에서 변경 승인함.
 - 30% 초과는 변경 승인 불가
-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

5 이행점검,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

- 시군센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,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
- 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
- *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,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모니터링, 추진 결과 보고 요구 시 제출

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, 교환, 대여 ③ 담보 제공

*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

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

- 사업 결과분석·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·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
-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- 추진성과,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